

종사원 Q&A

목 차

- I 사업합리화 시행
- II 특별명예퇴직 시행
- III 인사제도 변경
- IV 복지제도 개편
- V '1인 영업점' 창업지원
- VI 퇴직자 복지지원 강화

2014. 4

I. 사업합리화 시행

Q1. Mass영업, 개통/AS, 플라자 업무가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는?

- A. 해당 업무의 효율성 및 외부 위탁 용이성 등을 고려
특히 사내·외 중복수행 업무 중 외부 위탁이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함

Q2. 합리화 대상 분야의 직무/과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A.

직무	과업
Core Sales	· 홈영업_Mass, 홈영업_C&R, 영업지원, Plaza
고객서비스/영업	· 홈서비스(개통/AS 및 MOT)

Q3. 합리화 대상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A. 합리화 대상 업무는 향후 관련 회사에서만 수행 예정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 가능

Q4. 사업합리화 분야 직원들의 재배치 계획은?

- A. 직무별 적정 인원 산정 후 노사합의를 거쳐 직무전환교육 및 접점지역
재배치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은 별도 공지하겠음

II. 특별명예퇴직 시행

Q1. 향후 특별명예퇴직은 더 이상 없는가?

A. 추가적인 특별명퇴 없음

Q2. 이번 특별명예퇴직이 과거와 다른 점은?

A. 직원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일률적인 퇴직이 아닌 개선된 퇴직조건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제공함

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09년 대비 상향된 가산금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그룹사/관계사 취업을 알선함 (최대 2년)

Q3. 일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은?

A. 명예퇴직 직후 신속한 조직개편과 직무전환교육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간소화를 병행하여 조기 안정화 예정

Q4. 자격요건 여부와 퇴직금 산출내역 확인은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

A. 4.30일 기준 실근속 15년 이상 여부와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출 내역은 BIT-ERP-HR 내 별도 메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4.8일 13시 이후)

Q5. 재취업형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어떤 분야든 재취업이 가능한가?

A. 재취업형 신청시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그룹사 취업을 알선함

예를 들어, ITS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개통/AS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과거 개통/AS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취업 알선회사를 결정할 예정

재취업의 확정 여부는 해당 소속사에서 판단함

Q6. 재취업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가?

- A. kt m&s에 재취업하는 직원은 kt 유무선 상품에 대해 Mass 고객 대상으로 대면영업을 수행하게 되며,
ITS로 재취업하는 직원은 개통/AS 등 Mass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센터 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됨

Q7. 재취업 후 근로 조건은?

- A. 근로조건은 재취업 회사의 기준에 따르며, 급여는 연평균 2,500만원 수준임
※ 세부 지급 조건 및 항목은 상이할 수 있음
2년간 계약 후 근무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소속사에서 검토할 예정

[재취업 회사별 급여, 복지 항목]

○ kt m&s

급여 항목	복지 제도
- 고정급 (연 1,800만원 수준) - 기본급, 급식통근비, 초과근무수당 등 - 성과급 :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인터넷기준 월11건 판매유지시 연 7백만원 수준	- 경조사 지원 - 건강검진 - 단체보험 등

○ ITS (법인별 일부 항목 및 상세조건 상이)

급여 항목※	복지제도
- 고정급여 (연 1,800만원~2,200만원) - 기본급, 연장수당, 급식비, 통신비 - 변동급여 (연 74만원~550만원) - 근무수당, 생산성 실적수당 - 인센티브 (연 80만원~500만원) - 휴가비, 명절상여금, 기타성과급	- 경조사 지원 - 기념품 지급 - 창립기념일, 노동절, 생일 - 상조회 지원 등

※ 기존 kt 평균 작업 건수와 동일 수준으로 업무 수행 시 2,500만원 수준

- 급여 항목별 금액 규모는 법인별 상이

Q8. 퇴직 신청 후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가?

- A.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됨

Q9.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산정시 2013년도 고과인상분을 반영하는가?

- A. 반영하여 산정 예정

Ⅲ. 인사제도 변경

1 정기명예퇴직제도 폐지

Q1. 정기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A. 직원 고용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업무몰입도·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함

2 임금피크제 도입

Q1. 임금피크제 대상 및 임금조정률은 어떻게 되는가?

- A.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노사합의 후 공지 예정

Q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

- A.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2016.1.1)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조치를 권고

3 직렬 통합

Q1. 직렬을 통합하는 이유는?

- A. 직원 직렬이 사무/기술로 구분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 (인사시스템상 미기재)로,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직렬을 통합함

IV. 복지제도 개편

1 학자금 지원제도 변경

Q1. 대학학자금은 언제까지 지원 되는가?

- A. 퇴직예정직원의 경우 퇴직 전까지 전산 입력분에 한하여 지급되며,
재직직원은 '14년 5월 31일까지 발생 분에 한하여 지급

Q2. 기존 대학학자금을 대부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A.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제 도입시점('03.9월) 이전 대부하여 미상환액(371명, 총 8.6억원)이 있는 직원 중
- 퇴직예정직원은 명예퇴직금에서 일괄 공제 후 실 납입금의 75%를 지급 (5.13일 지급 예정)
 - 재직직원은 지원제 폐지로 5.31일까지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해야 실 납입금의 75%를 지급하며, 미상환시 실 납입금의 75%를 지급하지 않음
- ※ DC/혼합형 가입자는 상환방법 개별공지

Q3. 해외 고등학교의 경우 학자금이 지원되는가?

- A. 불가함

2 선택적 복지제도 변경

Q1.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복지포인트 수혜가 줄어들게 되는가?

- A.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공통포인트는 160만p에서 130만p로 조정되고, 인재육성p 및 교육보조비는 폐지되었으나, 조정된 30만p와 폐지된 재원은 일괄 변동포인트 재원으로 전환되어 사용
- 직원이 수혜받는 복지포인트 총 재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복지포인트 수혜 정도는 증가 가능

V. '1인 영업점' 창업지원

Q1. 누구나 '1인 영업점'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A. 퇴직형 선택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Q2. 영업점 창업지원 시행 시기 및 신청 방법은?

A. 금번 특별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부터 '15.6.30일까지 m&s의 판매점 주관부서(추후 연락망 공지)로 서류 제출시, '1인 영업점' 코드 부여

단, 희망자는 '14.5월초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도 '1인 영업점' 개설 가능하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Q3. 대리점을 개설하고 싶은데 절차는?

A. '1인 영업점'을 일정기간 운영(1년) 후 심사를 통해 개설 가능

Q4. '1인 영업점' 코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한가?

A. 영업점 코드 부여 6개월 후 1차 검증을 시행하고, 1차 검증 6개월 후 2차 검증을 시행하며, 각 검증단계에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코드 회수
세부 시행계획 추후 공지 예정

Q5. GB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며 다른 점은?

A. GB와는 별개로 운영.

GB는 퇴직시 판매성과 우수직원에게 한해 일정기간동안 관리수수료를 지급함

'1인 영업점'은 가입자 모집시 유치수수료를 지급함 (판매 건당 2~4만원)

※ 단,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VI. 퇴직자 복지지원 강화

Q1. kt 동우회 회원 가입 방법은?

A. 금번 명예퇴직시 동우회 가입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일괄 가입 처리됨

Q2. 동우회 가입비 및 평생회비는 어떻게 지원되는가?

A. 명예퇴금 지급시 동우회 가입비 및 평생회비 22만원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잔여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회사가 동우회 일괄 대납함

Q3. 비용 지원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되는가?

A. 퇴직금 수령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1만원
(가입비 및 평생회비 22만원의 5~ 6% : 퇴직소득세율 적용) 정도임